

주요경영사항 신고

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·공시합니다.

2007 년 09 월 12 일

금융감독위원회(금융감독원) 귀중

회 사 명 : (주)코디너스
(영문명) Codinus.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codinus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1-13 팍스타워 15층 B호
(전 화) 02-3472-5222

대 표 이 사 : 김 영 태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이사
(성 명) 김 용 삼 (전 화) 02-3472-5222

작 성 자 : (직 책) 차장
(성 명) 오 동 석 (전 화) 02-3472-5222

제 출 이 유 :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
사업목적 변경

※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,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,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,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업목적 변경

1. 변경내용		사업목적 추가
-사업목적 추가		- 바이오디젤 제조, 바이오디젤 플랜트 설치 제작 및 도소매업 - 화학관련분야의 개발, 제조 및 판매업 - 국내외 자원개발, 광산개발, 유전개발 및 매매업
-사업목적 삭제		해당사항 없음
-사업목적 변경	변경전	-
	변경후	-
2. 변경 주요이유		사업목적 추가 :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 및 수익 극대화
3. 사업 추진일정		-
4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07년 09월 12일
- 사외이사 참석여부	참석 (명)	-
	불참 (명)	1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	불참
5.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		2007년 10월 02일
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상기 사업목적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향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